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7-1301호

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 5.22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3-26호(2013. 4. 4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22호(2017. 3. 2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색·종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서류가 제출되었기에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해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,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 합니다.

2017년 11월 2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7.11. 2 ~ 2017.11.16(14일간)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 도시계획과 (☎ 02-351-7432)
- 2)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74-8900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0번지 일대(면적 : 36,458.6㎡)

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백광수)
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2-2 3층

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3년 4월 4일

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8개동 753세대(임대 135세대포함), 지하4층/지상30층 및 부대복리시설

7) 변경내용(정비사업의 시행기간)

- 당초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변경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※ 변경사유 :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시행기간 연장

8) 기타사항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2) 공람도서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 및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